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제출) 일자	심사경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2201703)	2024. 7.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4.9.2.) 상정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박홍배의원 (2206683)	2024. 12. 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2.18.)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전종덕의원 (2207830)	2025. 1. 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7.1.)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정춘생의원 (2210412)	2025. 5. 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8.25.)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박해철의원 (2213795)	2025. 10. 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6.2.5.)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이용우의원 (2216641)	2026. 2. 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6.3.23.)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24.)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u>5. ~ 10.</u> (생 략)	제2조(공휴일) ----- -----. 1. ~ 4. (현행과 같음) <u>5. 노동절(5월 1일)</u> <u>6. ~ 11.</u> (현행 제5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